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2. 23.

□ 정정 사유

(1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신탁 추가 (2)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정정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〈신설〉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	
		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	
		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	
		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	
		<u>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</u>	
		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	
		<u>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</u>	
		<u>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</u>	
		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2014.7.31	2015.1,31	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4.7.51	2013,1,31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	<u>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</u>	
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	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	
	자투자신탁 추가	<u>금 펀드</u>	
	시구시합	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	
		<u>축 펀드</u>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	환매조건부 매수	
가. 투자 대상	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현애포인도 애포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		<u>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</u>	
사항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	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	
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	모두자신닉에 두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u>금 펀드</u>	
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		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	
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<u>축 펀드</u>	

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	③ 세액공제(2014.1.1. 부터):	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터): 연		
관한 사항	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가입	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		
나. 과세	자 추가부담금(DC, 기업형 IRP)을	<u>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</u>		
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퇴	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	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		
직연금제도의 세제	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	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		
	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	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		
	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제59조의	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		
	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	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		
	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	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		
	외됩니다.	<u>외됩니다.</u>		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
1. 재무정보	반기기준으로 기재	<u>2015. 1. 14</u>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	U111201 111	2015 1 14		
황	반기기준으로 기재 	<u>2015. 1. 14</u>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기준으로 기재	<u>2015. 1. 14</u>		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		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		
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		
가. 의무해지	H /10/16 L 0	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		
		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		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		
관한 사항	소규모펀드	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개월		
나. 임의해지	처리방안 기재	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		
		의해야 합니다.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		③회계감사		
관한 사항		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		
│ │가. 정기보고서		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		
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		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		
제출 등		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		
		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		
	회계감사 관련 내용 기재	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		
		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		
		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	
		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		
		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		
		억원 이하인 경우		
		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		
	l			



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
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
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
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

